

## [공통서류]

▪ 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기준 발급,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) /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## [유의사항]

- 모든 서류는 열람용이 아닌 출력본으로, 보안해제, 압축 해제 후 첨부
  - PDF 파일 첨부를 권장(다른 확장자의 파일은 심사 시 오류 발생 가능성)
  - 아이폰으로 촬영한 jpg.jpeg.heic파일 등은 코덱 오류로 인해 확인 불가능하므로 다른 파일로 첨부 바람
- 다음 서류는 1개월 내 발급분으로 첨부
  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- 사업자등록증명, 재직증명서, 근무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로 첨부해야 하며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표시와 관계없이 첨부 가능
- 배우자가 있을 경우, 배우자의 (1)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(2)소득금액증명(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), (3)'추가 근로증명서류'(선택) 및 '추가 소득증명서류'(선택) 첨부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)은 5월 이후,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종합소득세 신고자용)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7월 이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음
  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(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3월 초까지,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)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
- 신청서류미흡으로 인한 심사부결 후 재심사 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람
- 은행 대출심사 시에도 연소득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므로, 대출 시 자격조건에서 벗어난 소득이 파악될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
- 추천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## [마이페이지(서울주거포털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클릭,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현황 상태메시지 안내)]

- 작성완료 : 신청이 완료되어 심사 대기 중, 추천서 심사에는 평일 기준 3일 내외 소요.
- 승인거부 : 추천서 신청자격 부적격, 인적사항 및 물건지 주소 오기재, 필요 첨부파일 누락, 첨부 파일 형식 미비 등의 이유로 심사 승인이 거부된 상태.
  - 승인거부 사유 확인 후 '수정' 버튼 눌러 서류 및 오기재 사항 등 보완하여 재심사요청 가능
- 승인 : 심사가 완료되어 추천서를 출력할 수 있음
- ※ 작성완료 후 '수정'버튼을 누르면 최종 수정한 시간이 최종적으로 작성완료한 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심사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.
  - 따라서, 작성완료 후 수정사항이 없다면 가급적 수정버튼 누르는 것은 지양하십시오.
- ※ 추천서 발급은 신청 순으로 진행되므로 신청 후 우선 문의 등으로 빠른 심사를 요청하더라도 불가합니다.

## [상황별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]

\* 추천서 심사 시 근로 및 소득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(승인거절 사유 확인 후 서류보완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하면 재승인요청 됨)

유형		근로증빙자료	소득증빙자료
직 장 가 입 자	전년도 동일회사 근무 (전년도 연말정산○)	▪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	▪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- 전년도 연말정산을 했으나, 전년도에 이직하여 소득금액증명원상 전(前) 직장과 소득이 합산되어 표시될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첨부
	당해 연도 취업/이직 (전년도 연말정산X)	▪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	▪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회사 발행 급여명세표(입사 월 부터 추천서 신청일까지 전체) - 해당 서류에는 현 직장명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, 확인자 직인(또는 서명)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※연소득금액 = (근무기간 내 소득합산액/근무개월수) ×12개월 ※당해 연도 이직자의 경우 1개월치 소득증빙자료(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) 증빙 가능해야 소득심사가가능하므로 해당서류 증빙불가 시점에서는 신청불가
사 업 소 득 자	개인사업자	▪사업자등록증명(발급 1개월 이내)	▪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종합소득세 신고자용)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
	프리랜서 (사업소득/기타소득세 3.3%공제)	▪재직증명서, 위촉증명서, 근무확인서 등(발급 1개월 이내) ▪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※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증빙자료로는 인정되지 않으나, 3.3% 공제하는 소득자임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사용됨	▪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※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음 ※보험모집인/방문판매원/음료품배달원 업종에 한하여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연말정산용만 인정됨) 대체 가능
일 용 근 로 자	전년도 동일회사 근무	▪재직증명서, 근무확인서 등(발급 1개월 이내)	▪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
	당해 연도 취업/이직	▪재직증명서, 위촉증명서, 근무확인서 등(발급 1개월 이내)	▪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회사 발행 급여명세서(입사 월 부터 추천서 신청일 까지 전체) - 해당 서류에는 현 직장명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, 확인자 직인(또는 서명)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- 세금을 제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회사 발행 급여명세서 상 세금을 제하지 않음이 표시되어야 하며, 급여 지급받은 통장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두 서류의 금액이 일치함을 증빙해야 함 -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, 근로 중으로 인정할 수 없음

유형		근로증빙자료	소득증빙자료
1년 이상 근로경험이 있는 경우	직장가입자 가입일 합산이 1년(365일)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</li> <li>■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최종 직장의)퇴직증명서</li> </ul> ※'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'은 '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'와 별개의 서류이므로 제출 시 유의	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
	직장가입자 가입일 합산이 1년(365일) 미만이면서 직장가입자 내역이 있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경력증명서, 근로계약서, 프리랜서계약서, 위촉증명서, 폐업사실증명 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실제 근로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</li> <li>- 계약기간만 있고 실제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계약기간 중 급여 지급내역을 증빙하여 근로기간으로 인정 가능(급여명세서, 임금대장, 원천징수확인서)</li> </ul> </li> <li>■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최종 직장의)퇴직증명서</li> </ul> ※'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'은 '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'와 별개의 서류이므로 제출 시 유의	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
	직장가입자 내역이 없는 경우	경력증명서, 근로계약서, 프리랜서계약서, 위촉증명서, 폐업사실증명 등	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
	1년 이상 근로경험이 없는 경우	※1년 이상 근로경험이 없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내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최종 직장의)퇴직증명서 첨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본인)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</li> <li>■ 부(父)·모(母)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소득금액증명원 귀속연도의 부모 합산소득은 7천만원을 초과하나 귀속연도 이후 퇴직 및 폐업을 하여 부모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</li> <li>→ 해당 부모님의 (1)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(2) 퇴직/경력증명서 또는 폐업증명원 추가 첨부</li> <li>※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등분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(父) 또는 모(母)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제 증명서 상에 그 상태(이혼/사망)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)</li> <li>② 등분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(父) 혹은 모(母)의 소득서류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※ 부모님 두 분 다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님 중 한분의 소득서류는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함</li> </ul> </li> </ul>

## [첨부서류 발급처]

※ 모든 서류는 열람용이 아닌 출력본으로, 보안해제, 압축 해제 후 첨부

- PDF 파일 첨부를 권장(다른 확장자의 파일은 심사 시 오류 발생 가능성)

- 아이폰으로 촬영한 jpg.jpeg,heic파일 등은 코덱 오류로 인해 확인 불가능하므로 다른 파일로 첨부 바람

-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 : 정부24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
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) 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- 소득금액증명: 홈택스 > 민원증명 > 소득금액증명
-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: 홈택스 > 민원증명 > 사실증명신청 >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: 회사 또는 홈택스
- 사업소득/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: 홈택스(로그인 후 MY홈택스>연말정산/장려금/학자금 탭>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)
-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(※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와 별개의 서류이므로 유의바람)
  -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> 전자민원 > 개인민원 >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> 증명서 등 발급 > 가입증명서(국/영문, 첫번째 칸 위치) > 프린트발급 후 스캔 또는 PDF 저장
  - ② 정부24 > 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’ 검색 후 “국문” 발급 (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가 아님을 유의)